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One형 플랜 유의 사항

- ✓ 상품의 특징
- ✓ 청약 시 주의사항
- < 계약 전 알릴 의무
- ✓ 계약 후 알릴 의무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아래의 내용은 프로미 다이렉트 반려동물보험(CM)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 등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 1600-0100)

상품의 특징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 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부지급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척회제도

· 정막실외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 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 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

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점을 보고 에보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사고 발생 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1588-01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인터넷: https://www.fcsc.kr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 등 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https://www.fcsc.kr

소해보험현회

전화: 02-3702-8585,8619 인터넷: http://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http://www.fss.or.kr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 치료비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됨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 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 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9.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3.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가.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나.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자세한 병명은 약관 확인)
 - 다.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라.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마.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바.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사. 미용으로 인한 비용
 - 아.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자. 손톱절제(며느리발톱제거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차. 입원중의 식이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카.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타.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파.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하.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갸.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냐.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 다.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랴. 가입동물이 개인 경우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지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 마. 가입동물이 고양이인 경우 비뇨기질환(요로결석 등),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 반려동물 배상책임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반려동물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반려동물 포함)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반려동물 사망위로금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